

Rationalization of University Library Management

<圖書館學 碩士學位論文 시리즈 3>

大學圖書館 經營의 合理化 方案에 관한 研究

李 應 善

檀國大圖書館圖書課長

編輯者註：本稿는 1973年度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司
書教育專攻(第2回) 碩士學位論文의 要約이다.

目 次

- 一. 序 論
- 二. 大學教育과 大學圖書館의 機能
- 三. 大學設置基準과 大學圖書館
- 四. 大學圖書館 機構組織의 理論的 背景
- 五. 國立大學圖書館機構組織의 實態考察과 問題點
- 六. 私立大學圖書館機構組織의 實態考察과 問題點
- 七. 大學圖書館 機構組織의 改善方案
- 八. 結 論

一. 序 論

教育法 第1條에 「教育은 弘益의 理念아래 모든 國民으로 하여금 人格을 完成하고 自主的生活能力과 公民으로서의 資質을 具有하게 하여 民族國家發展에 奉仕하여 人類共榮의 理想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라고 하였고, 同法 第108條에는 「大學은 國家와 人類社會發展에 必要한 學術의 深奧한 理論과 그 廣汎하고 精緻한 應用方法을 教授研究하여 指導의 人格을 淘冶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大學教育은 모든 國民의 人格完成과 自主的生活能力과 公民으로서의 資質具有를 위한 教育理念의 實現을 具體화하기 위하여 그 應用方法을 教授研究하여 人類共榮의 理想實現을 위한 指導의 人格者의 培養을 目的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大學education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補助施設中 가장 中心의인 施設을 든다면 그것은 다른아닌 大學圖書館일 것이다. 그러므로 本論文에서는 大學圖書館으로서의 機能을 제대로 發揮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圖書館의 機構組織이 機能發揮에 適合하도록 잘 짜여져야 한다고 主張하는 것이다. 따라서 本研究가 試圖하는 目的是 첫째 大學擴充奉仕(University Extensive Service)¹⁾에 直接寄與하고 大

學教育 發展을 促進시키는 大學圖書館의 當面 問題中 (職制確立과 定員問題, 職員의 資質向上問題, 參考業務의 擴充問題, 圖書館豫算의 增額問題 등) 機構組織에 關한 問題만을 다룬다. 둘째, 大學圖書館을 設置하는 데는 法的根據가 있어야 하고, 圖書館組織에 關한 規程 즉 各部署의 組織 및 事務分掌이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設置根據와 組織規程의 有無가 어찌한지를 評한다. 세째, 大學圖書館의 機構組織의 形態를 分析하여 問題點과 改善策을 提示하여 大學圖書館의 機能遂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目적이 있다.

그리고 本研究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具體的인 研究內容은 첫째, 大學圖書館의 機構組織의 形態를 分析하여 大學圖書館의 機構組織의 改善을 불가피하게 하는 要因을 밝힌다. 둘째, 大學圖書館의 機構組織의 問題點을 提示하여 機構組織改善을 위한 共同研究課題의 資料를 삼는데 있다.

大學圖書館 機構組織의 研究에 必要한 變數는 ①大學圖書館을 둘러싸고 있는 環境 ②圖書館組織의 內部構造 ③組織成員인 司書의 價值觀을 들 수 있으나 本論文에서는 現在의 大學圖書館이 本來의 機能을 發揮할 수 있는 機構組織인가의 實態만을 研究하고자 한다.

機構組織의 實態를 考察하는 對象機關은 國立大學校 7個校와 學生數 4,500名 以上과 藏書數 15,000冊以上인 私立綜合大學 7個校로 計 14個大學에 대하여 調査對象으로 定하였다.

二. 大學教育과 大學圖書館의 機能

圖書館은 閱覽室을 가진 보잘 것 없는 冊倉庫로서가 아니라 教育의 한 動態의인 機構로 運營되어야 한다는²⁾ 것은 常識化되어 있다. 大學圖書館은 學生들에게 知的糧食을 提供하고 教授陣의 研究를 뒷받침하여야

1) 大學圖書館이 大學教育을 支援함은勿論對社會奉仕를 看過할 수 없다. 즉 大學圖書館은 一般市民, 產業體 및 地域社會 公務員들에게도 그 奉仕를 提供해야하는 것이다.

2) M.A. 제傀드著, 李炳穆譯, 大學圖書館(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p. 2.

하여 모든 利用者로 하여금 圖書館의 모든 知的 文化的 飽宴의 參與하도록 하여야 한다.³⁾

圖書館 利用은 이러한 點에서 하나의 教育方法으로서 即 在來式 講義方式이나 討論方式을 超越한 새로운 教育方法으로서 그 意識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全 圖書館 藏書는 教科課程의 모든 科目과 聯關되고 調査 및 研究面에서 司書는 大學教授의 一員으로 學生을 指導하고 教育하여야 하는 것이다. 即 學生들로 하여금 比較的 多量의 知識과 物的 乃至는 知的 技術을 習得하고 教科이나 技術을 習得하는 過程에 있어서 繼續의이고 꾸준한 知的 探究에 對한 慣習을 發展시킴으로서 그 같은 成果를 거둘 수 있도록 指導한다는⁴⁾ 大學教育과 大學圖書館의 函數關係는 異意를 提起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막스 러너(Max Lerner)는 “The Revolutionary Frame of Our Time”이란 글에서 大學教育의 中心 目的은 價值觀의 革命이라고 하였는 바, 大學教育에 있어서 精神的 價值인 間接價値를 드높이는 삶의 哲學을 確立하지 못한다면 累卵의 危機의in 狀況이 끊임없이 連續되는 現代에 있어서 知性的 安定性(Intellectual Security)을 附與하는 올바른 文化變動의 方向잡이가 되어야 할 大學의 使命을 다 하였다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⁵⁾ 이러한 價值觀의 革命을 遂行하는 過程에 있어서 大學人은 그 革命의 道場을 大學圖書館으로 삼아야 할 것임은 分明해 지는 것이다.

大學圖書館의 機能은 大學社會가 가장 重要한 知的 인 資料源으로서 그 大學의 教育과 研究目的을 成就하도록 돋는 하나의 學術을 위한 補助機關이다.

그러므로 大學圖書館의 機能으로서는 ①大學內의 서어서비스 機關이고 ②大學內의 情報센터(Information Center)이고 ③大學內의 調査 研究機關인 것이다.⁶⁾ 이와 같이 大學圖書館은 大學教育에 直接 間接 參與 또는 奉仕하는 重要한 位置에 있는 바 이러한 奉仕機能을 제대로 發揮하기에는 무엇보다도豫算이나 專門職 司書의 確保 등에 重要한 與件이 될 것이다.

大學圖書館의 共通의in 機能을 들면 다음과 같다.⁷⁾ ①大學의 授業(教育) 計劃을 돋는다. ②授業進行에 使用되는 書籍, 定期刊行物, 文書, 音響資料 등을 蔽集, 整理하고 그 最善의 利用을 위해 奉仕한다. ③圖書館 資料를 利用하는데 必要로 하는 物的施設이나 條件을準備 提供한다. ④學生들이 効果의으로 圖書館施設 및 資料를 使用할 수 있도록 指導해 준다. ⑤學生들이 大學을 卒業한 後에도 그들의 知的發展을 圖書館을 利用하도록 自習의 習性을 育成함을 돋는다. ⑥教材以外의 趣味를 위한 讀書를 嘉勵한다. ⑦教授陣이나 大學生들의 研究活動에 隨伴하는 對圖書館 要求를 最大限으

로 充足시킨다. ⑧地域社會, 地方 및 其他의 圖書館들과相互協助한다.

上記의 機能을 圓滑히 發揮하자면 여러 가지 問題가 解決되어야 한다. 即 機構組織의 問題, 司書의 質的 向上問題, 參考業務의 擴充問題, 圖書館豫算의 増額問題⁸⁾ 등의 諸問題가 解決되어야 機能을 제대로 發揮할 수가 있을 것이다.

三. 大學設置基準令과 大學圖書館

大學圖書館에 對해 法의으로 어떤 規制와 保障을 받고 있는지를 考察하면 國立大學인 서울大學校를 除外한 國立大學校圖書館의 機構組織에 關한 規程은 없고 다만 施設과 資料에 關한 規程만 있다. 大學圖書館에 關한 關係法을 들면 大學設置基準令 第8條4項 및 第11條와 圖書館法 第3條, 第6條, 第4項, 第25條 및 第26條와 同法施行令 第2條 第2項 그리고 第4條 등에 成文化되어 있다.

이는 大學設置基準令에서 大學教育의 學究的 研究調查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中樞的 機關으로서 大學圖書館이 1955年에 圖書館을 設置하지 않은 一部 大學에 圖書館을 設置해야 한다는 規制였으며 1963年 10月 28日公布를 본 圖書館法은 늦게나마 圖書館 全般에 關한 規程이 나오게 된 것이다.

圖書館에 賦課된 使命을 成功的으로 完遂하기 위하여는 組織된 人間의 努力이 本質的인 것이며 이의 必須要件은 圖書館 職員의 構成이며 原動力이 되는 大學圖書館司書의 充用實態를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1. 國立大學校 司書의 充用實態

圖書館法 第26條에 「學校圖書館의 職務를 擔當할 職員으로서 實業高等學校, 初級大學, 大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에는 司書職員을 두어야 하며…」로 되어 있어 大學圖書館에 司書職員을 두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으며, 圖書館法施行令 第4條에 「法條6의 規定에 의한 司書職員의 資格은 正司書로 한다」로 司書職員의 資格을 規定하였다. 그리고 公務員試驗施行規定中에 「特殊職 公開競爭採用試驗應試資格表」에 3級은 正司書 資格證所持者, 4級과 5級은 正司書 및 準司書 資格證所持者로 應試資格을 주고 있으며 但 5級에 關해서는

3) 上揭書, p. 30.

4) 上揭書, p. 31.

5) 朴大善, “大學의 使命” 大學의 理解(서울, 연세 대학교 출판부, 1969) p. 44.

6) 推名六郎, 圖書館學概論(東京: 學藝圖書株式會社, 1960), 133面.

7) A.L.A. Personnel Organization and Procedure: : a Manual Suggested for Use in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 Chicago, 1952, p. 3.

8) 韓國圖書館協會編, 圖書館實務便覽(서울, 1967), 165面.

規程이 없다.

이렇게 司書職의 資格에 對하여 正司書와 準司書로 區分하고 公務員任用令에 의해 採用試驗에 합격하여야 司書가 될 수 있다. <表 省略>⁹⁾에 나타난 바와 같이 國立大學 7個校의 大學圖書館 職員數는 84名(24%)으로 學生 1,164名에 專門職員이 1名 끝이다.

2. 私立大學 司書의 充用質態

公務員任用令의 抵觸을 받지 않는 私立大學 司書職員의 任免은 學校自體의 人事政策에 달려 있다. 즉, 有資格司書를 採用하던 一般職員으로 하여금 司書의 業務를 擔當하게 하던 그저 몇名이 圖書館에 있으면 圖書館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듯 하다. <表 省略>⁹⁾에 나타난 바와 같이 私立大學 7個校의 大學圖書館 職員數는 229名이다. 이중 專門職員數는 103名으로 全職員에 約 23%가 되며 學生 532名에 專門職員은 1名 끝이다.

四. 大學圖書館의 機構組織의 理論的 背景

紙面 關係로 省略함. (參照: "國회도서 관보 vol. 11, no. 6 (74.7·8) pp. 67~69")

五. 國立大學圖書館 機構組織의 實態考察과 問題點

1.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 機構組織의 實態考察은 紙面 關係로 省略하고 問題點만 들면 다음과 같다.

가. 大學設置令上의 問題點

(1) 서울大學校設置令 第20條(圖書館) 機構에 關한 條項에 課에 關한 規定만 있고 係에 關한 規定은 없다. 이것은 課長 한사람이 여러 職員을 指揮監督하게 됨으로 統率의 範圍(Span of control)라는 組織原理와는 差異가 있는 組織이라 할 수 있다.

(2) 同設置令 第20條에 事務分掌은 課에 事務만 規定하였지 係業務에 關한 規定은 없다. 그러나 實地는 係가 있어 業務를 적당히 나누어 遂行하고 있으므로 組織의 專門化의 原理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3) 同設置令 第20條 第1項에 「司書課, 閱覽課에 課長은 書記官으로 補한다」고 規定되어 課長밑에 係長인 (3級乙)이 있어야 되는데 係에 關한 規程이 없기 때문에 係長인 司書官은 없고, 司書(4級甲)以下의 職級만 있게 되었으나, 司書의 昇進길은 永還히 막혀 있으며 責任과 權限委譲의 原則와는 組織의 原則에 比較하면 거리가 멀어 責任限界와 業務限界가 明確하지 않다.

(4) 同設置令 第20條에 課에 關한 規定만 있는데 附屬圖書館의 現在機構에는 係가 10個係나 있다. 이것은 課의 設置根據가 있는 正式的組織(Formal organization)이나 現在 奉仕業務를 遂行하고 있는 10個係는 當圖書館內에서만 알고 있는 設置根據가 없는 非正式的組織(Informal organization)으로 볼 수 있는데 이 非正

式的 組織의 業務上 責任과 權限이 問題點이라 하겠다.

나. 大學圖書館 館長職에 關한 問題點

同設置令 第10條 第1項의 「附屬施設의 長은 教授 또는 副教授로 兼補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教授는 研究에 大量의 時間을 割愛해야 한다. 그런데 館長은 業務의 把握이나 職員에 對한 指揮監督에도 大量의 精力을 傾注하여야 하고, 圖書館에 對한 專門知識도 있어야 하는데 教授職만이 館長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司書의 立場으로 볼 때 問題點이 있다고 하겠다.

다. 圖書館 專門職員의 奉仕能力의 限界에 關한 問題點

奉仕對象人員은 約 18,000名(教·職員포함)이며, 藏書는 647,967冊인데 機構는 但 3個課, 人員은 專門職員이 33名, 非專門職員이 44名으로 計 77名이다. 그러므로 專門職員 1人當 奉仕人員은 약 600名, 藏書는 專門職員 1人當 約 19,635冊이나 된다. 이러한 機構와 人員으로 大學圖書館의 機構를 제대로 發揮할 수 있을까 問題이다.

2. 其他 國立大學 附屬圖書館

各大學圖書館 機構組織의 實態考察은 紙面 關係上省略하고 機構組織의 問題點만을 들 수 있겠다.

가. 國立學校設置令上의 問題點

(1) 國立學校設置令 第11條(下部組織) 第1項에 「…研究施設에 處, 局 또는 課를 둘 수 있다」고 規定하여 課長 한사람이 指揮監督하게 되므로 統率의 範圍(Span of control)라는 組織原理와는 差異가 있다고 하겠다.

(2) 同設置令 第11條 第1項에 「課를 둘 수 있다」는 規定이 있는데 이 課에 關한 事務分掌規定은 없어 무슨 業務를 해야하는지 또 課만 둘 수 있는지 係에 關한 規程은 없어 課長과 課員만이 있게 되어 組織의 基本形態와는 거리가 먼 組織이라 하겠다.

(3) 同設置令 第11條 第1項에 課에 關한 規程만이 있고 係에 關한 規程은 없는데 現在 各國立大學 圖書館機構에는 係에 該當하는 部署가 각 大學圖書館마다 여려개 있다. 그러므로 課는 設置根據가 있는 正式的組織이나 現在 奉仕業務를 遂行하고 있는 係(室)에 該當되는 部署는 圖書館自體에서便宜上 만든 것으로 非正式的組織인데 이 非正式的組織이 正式的組織의 機能을遂行하고 있는 것이 問題點이라 하겠다.

나. 圖書館規程에 關한 問題點

圖書館規程은 圖書館의 運營, 資料의 利用 및 管理에 關한 事項을 規定하는 것인데 이 規程이 없으므로 業務遂行에 있어서 基準과 方針이 없어 紀律이 서지

9) 韓國圖書館協會編, 韓國圖書館統計, 1973.

10) 上揭書.

않으며組織構成員의活動가問題點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國立大學圖書館으로서는 서울大와忠北大圖書館만이圖書館規程이 있고其他國立大學圖書館은 아직 없는實情이다.

라. 圖書館機構組織上의 問題點

(1)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을 除外한 6個 國立大學附屬圖書館의 機構組織은 圖書館設置의 法的根據가 微弱하여 正式的組織보다 各大學의 實情과 그 圖書館의 立場에서便宜上 만들어진 非正式的組織이 大部分이다. 이리하여 大學教育目標達成에 補助機關으로서合理的인 機構組織이라 할 수 없는 點이 問題라 하겠다.

(2) 各 大學校圖書館의 機構組織에 있어서 機能을充分히發揮할 수 있는 課, 係 등의 職制가合理的으로組織되어 있지 않은 點이 問題라 하겠다.

(3) 職制의 確立과 더불어各課, 各係의 事務分掌을明白히 認定하여 責任界限의으로 業務를遂行할 수 있는體制의 缺如가 問題點이라 하겠다.

(4) 國立大學圖書館에 司書長이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國立學校設置令에도 없어 校內他部署(課)와對等한地位가 아닌 것 같으며 다만 圖書館의立場에서便宜上 만들어진 것으로 그格에 差異가 있어地位를 認定받을 수 없는現實인 것이다.

(5) 大學圖書館館長職에 關한 問題點

國立大學設置令 第6條, 第1項에 「研究施設에各各長을 둔다」고規定하였고, 同條 第2項에 「...研究施設의長은 教授 또는 副教授로補한다」고規定하고 있으므로館長은 教授職만이하게되어 있다.

日本의 경우를 보면 國立學校設置法施行規則抄(最終改正 1969年 6月 11日 文部省令 第18號) 第12條에 「國立大學의 附屬圖書館에館長을 두고, 그大學의 教授로補한다. 但必要한 경우에는 事務職員으로서도補할 수 있다」고規定하였고 또分館長의 경우도 「教授 또는 助教授로補하고 但必要한 경우에는 事務職員으로도補할 수 있다」고規定하였다.¹¹⁾

이와같이 教授 또는 專門職員이館長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우리와 같이 教授만이館長職을獨占한다는制度는 問題點이 있다고 하겠다.

(6) 圖書館專門職員의待遇에 關한 問題點

職制가確立되어 있지 않으니 定員도 없고 升進한機會도 없을뿐더러報酬도 적어 아무리忍耐心이 강한司書라 하더라도職業에矜持를 갖기가 어려운士氣도 큰 問題점으로 들 수 있다.

(7) 圖書館專門職員의奉仕能力의 限界에 關한 問題點

서울大學校를 除外한 6個 國立大學의學生數는 80,213名이며, 藏書는 484,257冊 圖書館의職員은 專門職員

이 51名, 非專門職員 78名으로 129計名이다. 專門職員1人當奉仕人員은約 1,573名이고, 藏書는約 9,495冊이나 된다. 이러한甚大한奉仕對象과藏書管理에現在와 같은 機構의 人員으로서는 圖書館의職能을 제대로發揮하기에는 어렵다고 본다.

六. 私立大學圖書館 機構組織의 問題點

1. 大學設置基準令上의 問題點

大學設置基準令 第8條 第4項에 「...圖書館設置를 하여야 한다」同設置令 第11條에 「圖書館의設備와 圖書의基準」에 關해서規定하였다. 이로 因해 設備와藏書는 그基準에 어느程度到達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設備와藏書를 management 機構과 司書의定員에 關한規程이 없어 施設과 資料量에比하여 圖書館의機構는奉仕體制의機構라기 보다 施設과 資料를 지키는程度의機構와 人員으로서奉仕를 잘 할 수 있는지 問題라 하겠다.

2. 圖書館規程上의 問題點

各大學의學則에研究施設을 둔다고規定하였고研究施設中첫째가附屬圖書館으로 되고 있고研究施設設置條項 第2項에 「研究施設에對한必要한規程은總長이 따로定한다」고規定하여 이條項에 의해서圖書館規程을制定한大學5個大學에지나지않으며, 또規程을制定하였다 하더라도機構組織에 關한條項은 거의없고施設과資料management에 關한條項이大部分이다.

3. 圖書館機構組織上의 問題點

가. 國·私立을莫論하고圖書館의機能과業務의重要性 및量, 質은他部署에比하여크다는것은自他가公認하면서도積極의인育成策을세우지않아合理的인機構組織과人的確保및豫算確保가잘되지않아機能遂行에莫大한支障을가져오고있음은司書의한사람으로안타까운일이라하겠다. 그러므로大學education에 있어서圖書館이中樞的補助機關으로그機能을充實히遂行할수있는職制의確立이早速히要望되는것이다.

機構組織은 어디까지나固定되어서는 안되고 그環境에適應할수있도록經營者는銳敏한經營姿勢가重要的 것이다. 그러므로現在의各大學校圖書館의機構組織이大學education目的에適應할수있느냐를 생각할때 問題點이 아닐수없다.

나. 大學圖書館의館長職에 關한 問題點

國·私立을莫論하고館長을教授가兼해야 現程度의機能이라도發揮할수있는지疑問點이많다. 教授는圖書館內容에對해서는司書보다 많이안다고할수있겠지만圖書整理의技術의in業務는잘보를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教授만이 館長職을 獨占하는 現制度는 矛盾點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校長, 校監은 資格證과 教師를 歷任하였어야 될 수가 있으며, 또 病院長도 醫師라야 될 수 있다. 그런데 大學圖書館의 館長만은 司書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問題點이 아닐 수 없다.

다. 專門職인 司書의 待遇에 關한 問題點

現在의 大學司書의 待遇로서는 勸獎을 할 수가 없는 實情이다. 왜냐하면 報酬도 問題는勿論 職場에 魅力이 적은 原因은 司書로서 最高로 昇進할 수 있는 職位가 課長으로 그 職位도 많아야 세자리 程度이고 現在停年退職은 平司書와 거의 같이 할 처지이기 때문에 다른 方法을 摸索하지 않고는 待遇問題가 解決될 수 없다고 보아 問題가 아닐 수 없다.

라. 專門職員의 奉仕能力의 限界에 關한 問題點

7個 私立大學의 學生總數는 54,734名이며, 藏書數는 總 1,595,500卷인데 比하여 機構는 1個課 乃至 3個課 程度이고, 職員은 司書가 103名, 非司書가 126名으로 司書 1人當 奉仕人員이 約 534名이며, 藏書는 1人當 約 15,500卷이나 된다. 現在 우리 나라 公務員 1人當 國民 75名인데 比하여 너무나 엄청난 奉仕人員과 藏書管理인 것이다. 이러한 實情으로도 圓滑한 奉仕가 이루어 질 수가 있을까 問題點인 것이다.

七. 大學圖書館 機構組織의 改善方案

1. 大學設置令의 改正方案

大學圖書館에 關한 各種法規를 統合하여 大學圖書館法을 制定하는 것이 最善의 方法이겠으나 現在의 우리 實情으로는 매우 어려울듯 하여 次善의 方法으로 各設置令을 改正하는 것이 急先務라 하겠다. 즉, 各設置令에 綜合大學圖書館의 機構는 最少限 館長, 副館長, 課(4個課以上) 係(12個以上)에 關해 規定되어야 하고 또 各部署의 責任者의 職級과 部署의 事務分掌을 明文化해서 研究調查機關으로서의 諸般活動에 法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各設置令의 改正(案)은 다음과 같다.

1) 서울大學設置令中改正(案)

第10條 第2項 「…附屬施設의 長은 教授 또는 副教授 및 專門職司書로 補하고 副館長은 專門職司書로 補한다」로 改正. 第20條(圖書館) 第1項 「附屬圖書館에 庶務課, 司書課, 閱覽課와 調查課를 두되, 庶務課長은 行政事務官으로, 司書課長과 閱覽課長은 書記官으로 補하고 調查課長은 教授, 副教授 또는 助教授로 兼補한다」를 「…課를 두되, 課에는 係를 두고, 課長은 正司書資格證을 所持한 司書官으로 補한다」로 改正.

2) 國立學校設置令中改正(案)

第10條(學長等) 第2項 「…研究施設의 長은 教授 또는 副教授로 補한다」를 「但 附屬圖書館은 館長과 副館長을 두고, 館長은 教授職 또는 專門司書로 補하고, 副館長은 專門司書로 補한다」로 改正. 第11條(下部組織) 第1項 「研究施設에 處·局 또는 課…」를 「但 附屬圖書館은 課을 4個課 以上두고 課에 係를 두되 한課에 3係以上 두어야 한다」로 改正.

第2項 「前項의 處·局 또는 課에 각各長을 둔다」를 「… 두되 附屬圖書館의 課長은 正司書資格證을 所持한 書記官으로 補하고 係長은 正司書資格證을 所持한 司書官으로 補한다」로 改正

3) 大學設置基準令中改正(案)

第8條第4項 「校舍에는 …圖書館…設置를 하여야 한다」를 「…圖書館을 設置하고, 館長과 副館長을 둔다」로 改正

第4項 新設 「機構는 課를 4個課以上으로 하여야 한다」

第5項 新設 「課에는 係를 두되, 한課에 3個係以上 두어야 한다」

2. 圖書館規程의 制定과 方向은 紙面 關係上 省略함. (參照 國회도서관보 vol. 11, no. 6 ('74.7.8) pp. 74 ~75)

3. 圖書館機構組織에 關한 改編方案

1) 機構組織의 改編方案

機構를 編成하는데는 組織計劃이 있어야 하는데 그計劃은 다음과 같은 節次를 밟아 樹立하여야 한다¹²⁾

①遂行할 또는 遂行하여야 할 特定業務를 識別하여 이를 廣範한 機能으로 모으고, ②그 機能을 同質의 單位나 部署로 配定하여, ③各 單位의 責任과 義務를 分明하게 하고 ④各 單位나 部署間에 區別해야 할 權限과 關係의 系線을 點出으로써 計劃을 이룩할 수 있다.

그리하여 綜合大學圖書館으로 最適合한 機構組織의 案을 圖示하면 다음<表>와 같다.

機構(案)을 說明하면 副官長制度를 採擇하였고, 庶務課는 間接業務로 지금과 다를 바 없으며, 司書課는 整理業務에 있어서 東書와 洋書를 分離하여 整理하고, 資料運營課는 資料의 利用에 關한 業務를 관할하여, 資料調查課는 各學問別로 教材研究, 文獻調查, 書誌調查, 索引 등의 業務를 하며, 定刊課는 定刊書의 重要性과 活用性이 높아지고 있어 國내와 定刊書의 華集, 閱覽, 保管을 集中的으로 함이 大學圖書館으로서 바람직 하겠다.

2) 館長職에 關한 改善方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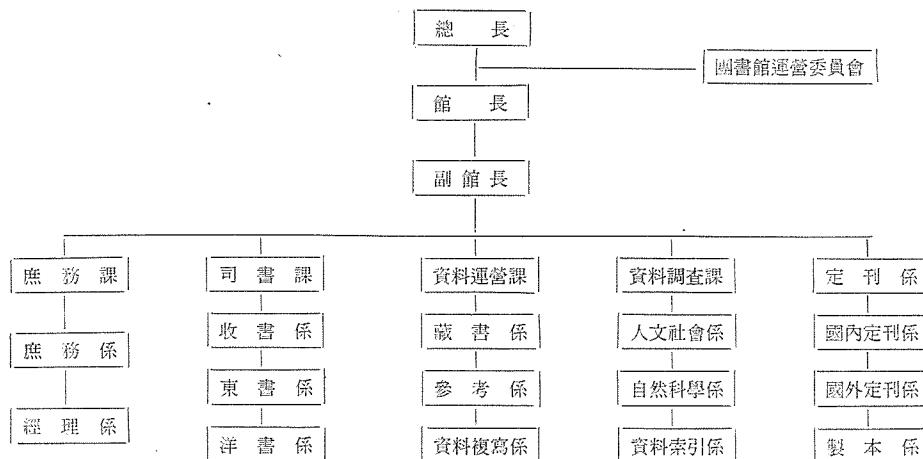
現行 各設置令에는 教授外는 館長이 될 수 없게 된 것

11) 社團法人 日本圖書館協會編, 〈前揭書〉 p. 41.

12) 李炳穆 譯 〈前揭書〉 pp. 46~47.

<表>

綜合大學圖書館機構(案)



을 司書도 館長이 될 수 있다는 門戶가開放되어야만 司書에게도 希望이 있고 士氣도 높아지며 優秀한 司書도 많아질 것이다.

3) 副館長制度의 新設方案

短點을 되도록 적게하기위하여 專門職인 司書로 充員하는 副館長制度가 있어야 學術的인 面과 實質的인 面이 서로 折衷되고 融合되면 理想的인 圖書館運營이 될 것으로 確信하여 副館長職의 新設을 提案하는 바이다.

4) 專門職員의 待遇에 關한 改善方案

教授와 同等한 待遇를 司書에게 教授職의 職位(rank)와 職名을 附與하여 教授陣과 對等한 備給特典을 주고 教員 및 研究職員의 構成員임을 公式的으로 認定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司書의 職位는 教授職位를 附與하게 되면 同僚의 位置에서 意思疏通을 하고 協力할 수 있기 때문에 大學의 目標達成에 積極的으로 參與하리라豫想된다.

八. 結論

大學圖書館의 機能은 量的 質的으로 擴大變化하여 있는 데 反하여 機構組織은 舊態依然의 踏步狀態에 있

어 機能을 제대로發揮하지 못하고 있음을 考察하였다. 有名한 「파아고우」의 말대로 圖書館缺이는 大學教育을 推進시킬 수도 없는事實인데 오늘의 우리 大學圖書館들은 古書(현책)의 保管所가 되어서도 안되고 베스트 셀러의 陣列場이 되어서도 안된다. 오로지 學問研究에 必須의인 廣範囲한 學術의 價値가 있는 古典 및 新刊圖書의 確保, 迅速正確한 情報의 提供奉仕와 施設의 充實, 專門職의 確保, 長短期의 企劃 등 모든 部面에 있어서 大學의 圖書館은 完璧하여야 한다. 그런데一般的인 認識이 圖書館은 消費機關이고 非生產機關이란 觀念으로 더욱 發展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一般的인 觀念은 形態있는 生產과 收入만을 생각한 것이지 間接的으로 圖書館을 通하여 얻는 利益과 生產은 생각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이러한 側面으로 보면 지금과 같이 放心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밀한 關心은 圖書館에 두어야하고 圖書館의 發展策을 考慮하지 않으면 알될 것이다. 그러므로 本論文은 大學의 心臟인 圖書館이 살아 있어야하고 活動할 수 있도록 하자면 무엇보다 圖書館의 機構組織이 適應組織으로써 动態的機構組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主張하는 바이다.

◎ 會費와 出版物 代金을 조속히 納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圖書館 發展을 위하여 努力하시는 會員 여러분께 感謝를 드립니다.

會員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會員 여러분께서 納付하는 會費와 出版物 代金은 協會의 運營을勿論 圖書館事業發展에 原動力이 되는 基本資金입니다.

여러 圖書館이 財政的으로 어려운 事情이 있을 것으로 아오나, 協會의 貧弱한 財政事情을 깊이 理解하시와 그간 未納하신 會費와 出版物代金 및 75年度 會費를 納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付託드립니다.